

인천광역시 서구 석남1동 공고 제2023-7호

쓰레기봉투 지정 판매소 직권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「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6조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(처분의 사전 통지)에 따라 쓰레기봉투 지정판매소의 폐업 후 미신고업소 등에 대하여 직권 취소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에 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3년 1월 11일

인천광역시 서구 석남1동 **장**



1. 제 목: 쓰레기봉투 지정 판매소 직권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
2. 근거법규: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
3. 공고기간: 2023. 1. 11. ~ 2023. 1. 25. (15일간)
4. 공고대상자 및 내역: 세븐일레븐 석남신석점 외 1개소 (붙임 참조)
5. 문의사항: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(☎032-718-3868)
6.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「행정심판법」 및 「행정소송법」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